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제 5 소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3-5소위23-경03호

민원표시 2AA-2306-0048238 신고사건 진행 상황 미통지 등에 대한 이의

신 청 인 A

피신청인 B

의 결 일 2023. 7. 10.

주 문

1. 피신청인에게, 신청인의 신고사건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 「근로감독관 집무규정」 제42조를 위반한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.
2.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.

이 유

1. 신청취지

신청인은 ○○건설 대표 C를 ‘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’로 신고(이하 “이 민원 사건”이라 한다)하였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진행 상황 및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조치해달라.

2. 피신청인의 주장

담당 근로감독관은 신청인과 통화하면서 이 민원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고, 2023. 5. 23. 작성한 「처리상황 중간회신」을 서면으로 통보 하였다.

3. 사실관계

가.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이 민원 사건의 처리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.

표 생략

나. 담당 근로감독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) 신청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사건 내용 및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,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처리기간을 2차례 연장하

였으나, 연장통지서를 발송하지는 않았다.

- 2) 「근로감독관 직무규정」 제42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「처리상황 중간회신」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, 검사 D의 수사지휘에 따라 2023. 6. 1. 사건을 종결하였다.

다. 신청인은 2023. 2. 8. 부터 같은 해 6. 1. 까지 담당 근로감독관과 약 20회 통화한 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, 이를 통해 신청인과 사건 진행 중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.

4. 판단

가. 관련규정

「근로감독관 직무규정」(고용노동부 훈령 제374호)

제37조(사건의 조사)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·친절·공정·정확히 조사·처리하여야 한다.

제42조(처리기간) ① 고소·고발·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

② 고소·고발·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.

③ 고소·고발·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

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또한,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체불 사업주가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용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용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(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내용

- 1) 근로감독관이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, 「근로감독관 직무규정」 제42조 제4항은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체없이 서식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민원 사건의 처리기간을 2차례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.
- 2) 근로감독관이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, 신청인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통화하였다는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하고, 신청인이 제출한 ‘통화 기록 목록’ 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. 또한, 2023. 5. 23. 작성된 「처리상황 중간회신」 에서 ‘검사 수사지휘가 이루어져 처리중임을 알려드리며’ 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.

5. 결론

그러므로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,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3년 7월 10일